

특정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체육회 특정감사 -

2024. 6. .

## □ 처분요구일람표

|    |                    |            |       |    |
|----|--------------------|------------|-------|----|
| 1. | 기본 재산 관리 소홀        | (시정, 기관경고) | ..... | 3  |
| 2. | 승마장 관리위탁 업무 추진 부적정 | (주의, 기관경고) | ..... | 7  |
| 3. | 보조금 취득 자산 관리 부적정   | (시정)       | ..... | 12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기관경고)

제 목 기본재산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 남구 대명동 산 ㉠번지 외 5필지의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표] 경상북도체육회 소유 부동산 명세

| 구 분 | 주 소              | 면 적 (㎡) | 지 목 | 취득일자          |
|-----|------------------|---------|-----|---------------|
| 토지  | ◇◇◇◇시 남구 대명동 산 ㉠ | 965     | 임야  | 1974. 11. 29. |
| "   | ◇◇◇◇시 남구 대명동 산 ㉠ | 10      | 임야  | "             |
| "   | ◇◇◇◇시 남구 대명동 산 ㉠ | 31,946  | 임야  | "             |
| "   | ◇◇◇◇시 남구 대명동 산 ㉠ | 17,455  | 임야  | "             |
| "   | ◇◇◇◇시 남구 대명동 산 ㉠ | 5,390   | 임야  | "             |
| "   | ◇◇◇◇시 남구 대명동 ㉠㉠  | 288     | 도로  | "             |

체육회의 위 기본재산은 1975년 제56회 ▽▽▽▽대회(◇◇◇시 개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74. 9. 5. '경북체육회장과 ◇◇◇시장간 체결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1974. 11. 29. ◇◇◇시가 체육회 명의로 ▽▽▽▽대회 추진을 위한 승마장, 궁도장(국궁장, 양궁장) 건립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이다.

「경상북도체육회 정관」 제43조에 따르면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5조

에서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및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가 포함되며,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 증명서와 도면을 갖추고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관리 의무 규정에 따라야 하고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고 매년 재산 등기, 이용 현황 등 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4. 4. 25. 감사일 현재까지 기본재산에 대하여 대장 구비와 재산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1974. 9. 5. 체육회가 ◇◇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체육회 소유의 부지에 ◇◇시가 건립한 승마장, 궁도장(국궁장, 양궁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영구히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시가 건립한 시설물은 ◇◇시 소유로 체육회는 ◇◇시가 건립한 시설물에 대한 부지 사용료 청구 및 시설물 배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1975년 ▽▽▽▽대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1999. 5. 10. ◇◇◇◇시장이 ◇◇◇◇시 남구 대명동 산 306-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04m<sup>2</sup> 규모의 양궁장을 축조하면서, 부지소유자인 체육회의 부지사용 승낙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립되었는데도 건축행위자인 ◇◇◇◇시장에 대하여 부지 원상회복 요구 등 토지 소유자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사에서 체육회의 기본재산인 ◇◇◇◇시 남구 대명동 산 306번지에 대하여, 2017. 6. 6.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목적으로 2,335㎡ 지표면의 상공 12미터 이상 24미터 이하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과 토지사용에 따른 지료금 26,595,650원을 등기하였는데도 체육회는 이를 2023. 10월 경 인지하였고 등기 권리 귀속 변경사항을 정비되지 않아 공탁금을 2024. 4. 25. 감사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고<sup>1)</sup> 또한 체육회 명칭변경(2016. 3. 3.), 주사무소 이전(2001. 3. 14.), 체육회 법인 형태 변경에 따른 권리귀속(2021. 6. 7.) 등 등기 변경 사항을 2024. 4. 9. 이 되어서야 일괄로 완료하였다.

아울러 2023. 12. 14. 법무법인 □□□를 통해 '1974. 9. 5.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협약의 효력을 정지, 해지하는 등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결과를 받고도 재산권 행사를 위한 협약서의 효력을 정지, 해지할 의사표시를 ◇◇시에 하지 않아 토지 지상권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여 주시고, 공탁금 수령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1) 2024. 4. 9. 등기 정비 후 현재 공탁금 수령 추진 중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기관경고)

제 목 승마장 관리위탁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시 남구 대명동 산 306-4번지의 체육회 기본재산인 승마장에 대하여 2004년<sup>2)</sup>부터 2017년까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승마장 위·수탁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협회에 승마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였다.

### 1. 관리위탁 관리 부적정

「경상북도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3조(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9조,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운영 협약서」 제2조(관리 운영)에 따르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전년도 1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2부 작성하여 체육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매년 1월말까지 체육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승마장 관리와 관련하여 2004년 이전은 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가 없어 관리 현황이 확인이 안됨  
위탁기간 : ① 2004.1.1. ~ 2017.12.31., ② 2023. 5. 1. ~ 2024. 12. 31.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04년 ~ 2017년 기간동안 ☆☆☆☆협회로부터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를 제출받아 사전 승인하여야 했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수지결산검토후 승마장 관리위탁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체육회에서는 2004년 ~ 2017년 기간동안 ☆☆☆☆협회로부터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를 제출받아 승마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여야 함에도 관련서류를 제출 받지도 않았고 점검 하지도 않았으며, 매년 1월 말까지 수지결산서를 제출받지도 않아 수지결산 검토 없이 매년 24,000천원 총 336,000천원을 승마장 관리위탁 운영비로 지급하였다.

## 2. 승마장 재산 권리 확보 소홀

「민법」 제211조 내지 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17. 12. 31. ☆☆☆☆협회와 승마장 관리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2018. 1. 1. ~ 2021. 2. 18. 기간동안 승마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협회 부회장 ★★에 대하여 소유권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체육회에서는 2018. 1. 1. ~ 2021. 2. 18. 기간동안 승마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협회 부회장 ★★에 대하여 소유권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지 않았다.

### 3. 승마장 관리위탁 절차 이행 소홀

「정관」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국유재산법」 제29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23. 5. 1. 체육회 승마장을 ☆☆☆☆협회에 관리위탁 하며 ① 기본재산인 승마장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고 ②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체육회에서는 2023. 5. 1. 체육회 승마장을 ☆☆☆☆협회에 관리위탁 하며 ① 기본재산인 승마장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례적으로 관리위탁 하였고, ②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 하지 않았다.

### 4. 승마장 수탁자 관리 소홀

「국유재산법」 제29조, 「체육시설(승마장) 위·수탁관리 운영 협약서(2023. 5. 1. 계약 체결)」에 따르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체육시설(승마장)의 위·수탁의 목적은 체육시설(승마장)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토록 하여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협회는 승마장을 승마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자 재산(토지, 건물, 기타시설)을 수탁 당시 상태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24. 1. 25. ☆☆☆☆협회 부회장 ★★★★★로부터 승마장을 명도 완료함에 따라 명도 전 승마장으로 정상 운영(2023. 11. 20 KBS보도당시 정상운영)되었던 시설에 대하여 ☆☆☆☆협회에 승마장을 승마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자 재산(토지, 건물, 기타시설)을 수탁 당시 상태로 유지 관리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체육회에서는 2024. 1. 25. ☆☆☆☆협회 부회장 ★★★★★로부터 승마장을 명도 완료함에 따라 명도 전 승마장으로 정상 운영(2023. 11. 20 KBS보도당시 정상운영)되었던 시설에 대하여 ☆☆☆☆협회에서 정상운영 ·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4. 4. 24. 감사일 현재까지 승마장을 관리수탁한 ☆☆☆☆협회에서 승마장을 폐쇄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제102회 ■■■전 개최(2021. 10. 8. ~ 2021. 10. 14.)에 필요한 경기용기구를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입하였다.

「경상북도체육회 정관」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체육회 재산관리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83조에 따르면 도체육회의 물품관리는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 1]에서는 물품을 종류별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구분 하도록 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품은 물품출납원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 체육회는 제102회 ■■■■전 운영지원에 필요한 ■■■■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비<sup>3)</sup> 총 115억 원 중 경기용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보조금 60억 원을 2021. 2. 18. 경상북도에 교부 신청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21. 4. 12. 보조금 6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기획단-1938)하여, 도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2021. 9. 9. 42개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요구한 경기용기구 등을 조달청과 ‘102회 ∇∇∇∇대회 종목별 경기용기구 구입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종 43,250점<sup>4)</sup>을 4,878,759,530원(조달 수수료 포함)에 순차적으로 납품받았다.

한편 경상북도가 도체육회로 시행한 위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처분이 제한되며 처분 등에 있어서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도체육회에서 제102회 ■■■■전 개최를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기용구의 관리에 있어서는 소모품과 비품으로 구분하고, 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양도 등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상북도지사의 승인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체육회에서는 제102회 ■■■■전 개최에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물품 중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지 않았으며, ■■■■전 후 실제 회원종목단체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일회성 소모품을 제외한 372종 7,812점(취득가액: 4,229,389,850원)을

3) ■■■■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비 :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체육회로 지원한 ■■■■전 경기운영부 전액 보조금(국비 20, 도비 95)으로 경상북도체육회의 교부 요청에 따라 월별 교부(6월 60억 원, 5월 35억 원, 7월 20억 원)

4) 550종 43,250점 : 요트종목단체의 1점당 취득가액 65,484,000원의 폴란드산 AVA 6.3, 트레일러 수입 물품 포함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24. 2. 16. ○○○○○○에서 개최된 도체육회 제7차 이사회에서 33개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관리전환(무상양여)하는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보유 비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물품출납원에 의하여 출납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